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6차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62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제221136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	3
나.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주체 확대 등(안 제29조 등)	9

I.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제221136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7. 9.

다. 회 부 일 : 2025. 7.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과 함께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대책 수립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호의 수질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이 여러차례 변경되었고,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사업 진행 등으로 인해 부영양화 및 빈산소수괴발생 등의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등 수질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새만금보다 앞서 추진된 시화호의 경우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과 같이 심각한 수질오염에 직면해 한때 ‘죽음의 호수’로 악명을 떨쳤지만, 지난 1997년부터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정으로 해수호로 전

환한 결과 ‘생명의 갯벌’로 다시 회복한 사례가 있음.

이에 새만금호 역시 기존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해수호의 효과적인 수질 및 환경 관리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 등).

3. 검토의견

가.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 -----해수호, 호소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새만금호”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5. --새만금 해수호-----새만금방조제로 둘러싸인 내측의 해역을----.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개정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해수호’를 포함하려는 것임.

새만금호는 2006년 4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조성된 인공호수로 조성 이후 배수갑문 2개소(신시, 가력)를 통해 외해의 해수가 유출입되고 있음.

정부는 2001년부터 새만금호의 목표수질¹⁾ 달성을 위해 10년 단위로

1)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은 1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2001년~2010년)에서 농업용수 기준인 IV등급으로 하였고,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2011년~2020년)에서 호(湖)의 중상류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IV등급, 도시용지 구간인 하류는 III등급으로 설정하였으며, 3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2021년~2030년)에서도 2단계와 동일한 목표수질을 설정함.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1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2001년~2010년)에서는 1조 4,116억원을 투자²⁾하였고,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2011년~2020년)에서는 3조 966억원을 투자³⁾하였으며, 3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2021년~2030년)에서는 1조 6,875억원을 투자⁴⁾할 계획임.

그런데,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수질상태는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사업 진행 등으로 인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음(제안이유 참조).

이에, 개정안은 새만금호를 기존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함으로써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새만금사업 지역의 생태계 및 수산업을 복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새만금호는 아래와 같이 방조제로 외해와 차단되어 있으며, 관리수위는 현재 -1.5m로 유지되고 있음.

2)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이명박정부 새만금사업 추진 백서”, 2012, p.184 참조

3) 국립환경과학원, “새만금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 최종요약보고서”, 2020. p.82 참조

4) 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제26차 새만금위원회 안건 서면 심의 확정”, 2022. 1. 참조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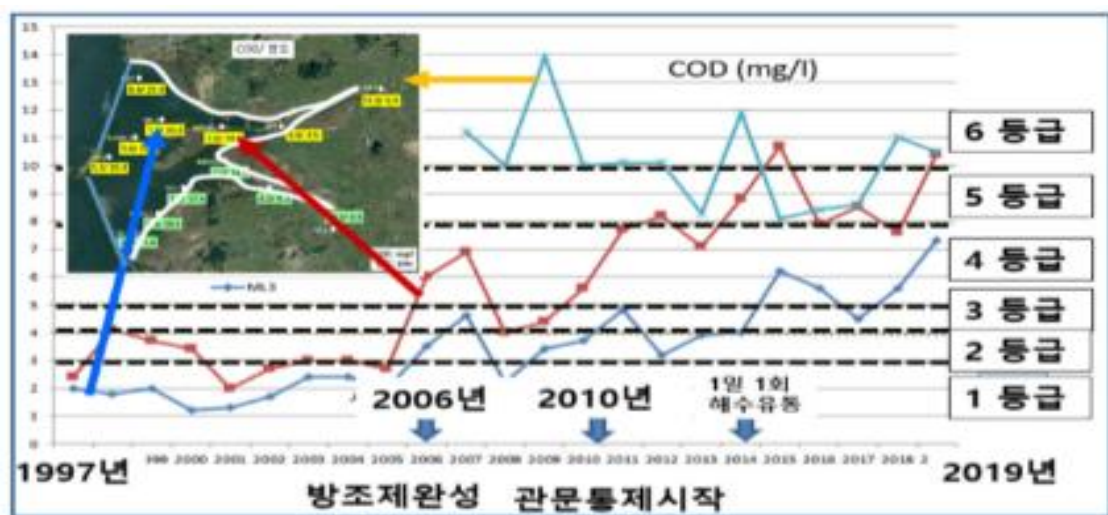
관련 연구⁵⁾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 바깥 바다의 평균 간조위는 -1.38m인데, 대조기에는 -3.02m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내부의 고여 있는 물은 조석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고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결과로 용존산소(DO) 부족, 유기물 퇴적, 조류 번식 등 심각한 수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는 새만금호 내로 유입되는 해수량의 감소와 비례해서 악화되었다는 연구⁶⁾도 있음.

6) 대한민국 국회·한국해양정책학회, “새만금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25. 6. p.14 참조

2006년 방조제가 완성된 이후 좁은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량이 크게 감소하여 수질이 악화되었고, 2010년 배수갑문 24시간 개방에서 일부 시간 2회 개방으로 변경되면서 해수유통량이 더욱 감소하여 수질이 악화되었으며, 2014년 배수갑문 개방 횟수가 1회로 줄어들면서 수질이 더욱 나빠졌다는 것임.

【 새만금호 수질 악화 현황 】



※ 자료: 대한민국 국회·한국해양정책학회, “새만금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25. 6.

국립환경과학원의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2011년~2020년) 종합평가⁷⁾에서도 새만금호의 수질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에도 불구하고 호내 수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의 유출입량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음.

7) 국립환경과학원, “새만금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 최종요약보고서”, 2020. p.149 참조

이에,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일시적으로 확대하였고, 제32차 새만금위원회(2025. 4.)에서 배수갑문의 확대 운영에 따라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되었다고 발표함과 아울러 1일 2회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검토⁸⁾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새만금위원회의 발표와 달리 새만금호 내 수질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1일 2회 해수유통’ 역시 ‘- 1.5m 관리 수위’ 정책으로 한 달에 10일 이상 해수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환경단체에 따르면, 2025년 6월 새만금호 내 11개 지점에서 용존산소량과 염분농도 등을 조사(2025. 6.)한 결과⁹⁾ 표층수 부분은 비교적 양호하였지만, 새만금호 수심 8m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일반 생물들이 살 수 없는 1mg/L 이하로 나타났고, 7m~8m 이상의 퇴적토에서도 일반적인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없었음.

또한, ‘새만금 배수갑문 운영계획’을 확인한 결과¹⁰⁾ 2025년 6월에는 1

8) 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 “제32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2025. 5. 1.

9) 한겨레, ‘산소 부족’ 새만금, 정부는 “문제 없다”... 조사단 “생태계 위기”, 2025. 8. 7.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새만금호 내 수질조사 결과 관련 기사

10) 오마이뉴스, “새만금호 수질 조사 결과, 정부 발표와 달리 심각한 상황”, 2025. 7. 24.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배수갑문 운영현황 조사 관련 기사

일 2회 해수유통을 한 날이 3일, 1일 1회 해수유통을 한 날이 9일이었고, 2025년 7월에는 1일 2회 5일, 1일 1회가 11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부의 1일 2회 해수유통 정책이 한계가 있으므로, 해수의 상시유통을 통해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은 입법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다만, 새만금호가 해수의 상시유통을 통해 해수호로 전환되는 경우 현재 관리수위(-1.5m) 정책의 변경과 새만금호 주변의 안전을 위한 방수제 증고 등 추가 사업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호의 해수호로의 전환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새만금개발청은 해수호 전환이 새만금 지역의 기존 계획 및 진행 중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만금호가 향후 수문 증설 등을 통해 해수유통을 확대하더라도 현재 관리수위를 유지하는 경우, 하루 최대 해수유통량이 15~28%로 예상되어 담수에 가까운 호소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나.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주체 확대 등(안 제2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u>새만금사업지역의</u> 환경 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 <u>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 해수호는 제외한다)</u> ----- ----- ----- -----.
② 환경부장관은 <u>새만금사업지역의</u>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 <u>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u> ----- ----- ----- -----.
③ 환경부장관은 <u>새만금사업지역</u>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 ----- -----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u>새만금사업지역에서</u>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u>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 해수호를 포함한다)에서</u> ----- ----- ----- ----- ----- -----.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

현행	개정안
획)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u>환경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u>환경부장관</u>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u>새만금호의</u> 원수(原水)를 공급받는 자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u>새만금호의</u> 원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2. (생략) ③ ~ ⑤ (생략)	획) ① ----- ----- ----- ----- ----- -----<u>환경부장관</u> <u>관과 해양수산부장관</u>에게-----. ② <u>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u>은----- ----- -----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 ----- ----- ----- ----- -----. 1. <u>새만금 해수호의</u>----- ----- 2. (현행과 같음) ② ----- ----- -----. 1. <u>새만금 해수호의</u>-----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u>새만금호</u> 를 이용한 수익사업	13. ----- <u>새만금 해수호</u> -----
14. ~ 16. (생략)	14. ~ 16.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② (생략)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u>새만금호</u>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 <u>새만금 해수호</u> ----- -----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u>새만금호</u> 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	6. ----- <u>새만금 해수호</u> -----.

현행	개정안
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이 시행·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 외한다.	----- ----- ----- -----.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 무)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법 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 시설·방조제· <u>새만금호</u> 등 관리시 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 다.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 무) ① ----- ----- ----- <u>새만금 해수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유지관리채원 마련을 위한 수 익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채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u>새만금호</u>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유지관리채원 마련을 위한 수 익사업) ① ----- ----- ----- ----- ----- <u>새만금 해수호</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① 환경부장관의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수립·시행, 수질환경모니터링 실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조치 권한에서 새만금 해수호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안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조치 권한에서 새만금 해수호에 대한 권한을 포함하며(안 제29조제4항), ③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의 제출 대상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확대하고(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④ 안 제2조제5호11)에 따라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5조, 제36조의4, 제38조, 제55조, 제57조).

현행법 제29조¹²⁾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¹³⁾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수립·시행하고(제1항),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며(제2항),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음(제4항).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새만금 해수호”란 새만금방조제로 둘러싸인 내측의 해역을 말한다.

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훼손과 그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3) 「정부조직법」 개정(2025. 10. 1.)으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표기함.

또한, 현행법 제30조¹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 개선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처럼 현행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환경관리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데, 개정안은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이원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개정안 제29조와 제30조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¹⁵⁾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해역(해양 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및 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고, 이들의 지정, 해제,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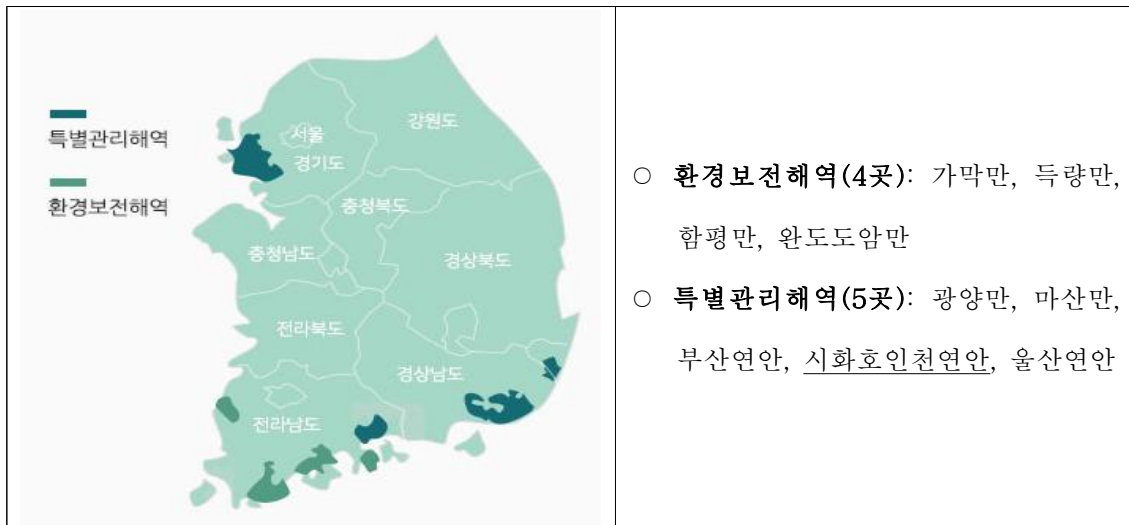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의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2.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결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 결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현황 】



※ 자료: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새만금호와 유사한 사례인 시화호는 원래 농지와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담수호로 계획되었으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일부구간 해수유통을 허용하는 해수화가 확정되어, 2000년 2월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¹⁶⁾되었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새만금호가 해수호로 전환되는 경우 새만금호의 환경관리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 제29조와 제30조는 입법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됨.

16)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해양관측&정도관리→환경관리해역→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 참조

다만, 특별관리해역은 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하고 있고, ‘제4차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¹⁷⁾’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등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제4차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¹⁸⁾도 해면부 면적 154.2km², 육지부 면적 328.7km²이고, 행정구역은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를 포함하고 있음.

【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의 관리범위 및 구역 】



※ 자료: 제4차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 2024. 3. p.6

17) 해양수산부, “제4차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 2024. 3. p.3 참조

18) 해양수산부, “제4차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 2024. 3. p.5 참조

이처럼,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은 환경관리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 제29조 및 제30조를 따르는 경우 새만금
사업지역은 환경관리 주체가 이원화되게 됨.

환경관리 주체가 이원화되는 경우 정책의 비일관성, 의사결정 지연,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환경관리 주체의 일원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개선대책 등과의 일관
성·연계성, 기존 개발계획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할 때, 권한 변경은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 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일관
성 및 연계성을 위해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호 내부에 대한 개발계획이 2050년까지 수립되
어 있으므로 개발 완료 이후 수질관리 기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90